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지윤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3673호, 2023. 8. 22., 일부개정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기존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일로 개정함(안 제17조).
- 인용된 법률의 제명 및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29조제4항 제3호 및 제32조제3항제2호다목)
-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,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6회에서 12회로 개정함(안 제35조 제2항).
- 관사 운영 실정에 맞게 관사의 운영비 부담에 관한 규정을 개정

함(안 제55조).

○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(안 제62조제1항)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기부채납의 경우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)의 규정과 일치시키고, 조례에서 인용된 법률의 제명과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,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기준금액과 연 분할납수 횟수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완화함과 함께, 관사 운영에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- 안 제17조는 법 제21조제1항*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“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”을 사용허가기간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
 - 현행 조례 제17조는 “기부채납일”을 원칙적으로 사용허가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되 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”을 예외적으로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,
 - 기부채납의 경우에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일견 해석상의 오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,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1조(사용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조에서 “총 사용가능기간”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- 안 제29조제4항제3호에서 인용한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제명이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개정되었고, 안 제32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인용한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7조를 삭제하고, 동일한 내용의 조문이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의 신설과 함께 동법 제10조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35조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) 제32조제2항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과 연 분할납부 횟수를 각각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, 연 6회에서 연 12회로 완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2023. 8. 22. 개정 전 시행령	2023. 8. 22. 개정 후 시행령
제32조(대부료의 납부기한) ② 법 제3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와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	제32조(대부료의 납부기한) ② 법 제3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와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- 안 제62조는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2023. 8. 22. 개정 전 시행령	2023. 8. 22. 개정 후 시행령
제81조(변상금) ① (본문 생략) 다만, <u>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</u>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	제81조(변상금) ① (본문 생략) 다만, <u>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</u>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- 한편 안 제55조는 본문에서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면서, 단서는 예외적으로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정하고 있는바,
- 기존에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었던 보일러 운영비, 전기·전화·수도 요금, 관사가 아파트일 경우 공동관리비 등을 삭제하고,
 -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,
 - 관사 운영의 실정에 맞는 개정으로 사료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